■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의2서식] <개정 2020. 6. 4.>

영리사기업체 외의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

< 작성기관 : >

연번	기관명	유형	대표자	사업자 등록번호 (고유번호)	소재지	외형거래액 또는 기본재산 (억원)	비고

작성방법

○ 작성기관별로 해당 기관을 "가, 나, 다"순으로 적되, 유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십시오.

○ 유형은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제6호까지 및 제8호에서 제11호까지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유형을 명시하십시오.

※ 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은 별지 제18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작성하십시오.

○ 외형거래액은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법무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.

○ 기본재산은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